「'24년 12월말 결산법인」

중간예납 신고·납부 안내

2024. 8.

인천지방국세청 NTS Incheon Regional Office 법인세과

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요약

□ **(개요) 12월말 결산법인**은 **9.2.**(월)*까지 '1.1.부터 6.30.까지'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**중간예납세액**을 **신고·납부****해야 합니다. 참고 1

* 올해는 8월 31일(토)이 휴일이므로 9.2.(월)까지 신고·납부

**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제외

○ 법인세 중간예납은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**의 50%를 납부하거나 **상반기 사업실적**을 결산하여 신고·납부할 수 있습니다.

○ **납부할 세액**이 **1천만 원**을 **초과**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, **중소기업**은 **2개월까지 분할**하여 **납부**할 수 있습니다.

▌ 분할납부 기준 및 납부시기 ▐

구 분	내 용
분할납부 금액	■ 납부할 세액 1천 만원 초과 ~2천만 원 이하 :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■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: 납부할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
분할납부 시기	■ 일반기업 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(이번 신고는 10. 2.까지) ■ 중소기업 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(이번 신고는 11. 4.까지)

□ **(신고편의)**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**8.1.(목)**부터 **홈택스, 모바일 홈택스**를 통해 편리하게 **전자신고** 할 수 있습니다. 참고 2

○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**신고**하는 경우, **중간예납세액**을 **자동**으로 **계산**해주는 「**미리채움 서비스***」를 이용하면 **간편하게 신고**할 수 있습니다.

* 홈택스 경로 : (원스톱) 접속 후 알림창 →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

○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**은 「**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***」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홈택스 경로 : (원스톱) 접속 후 알림창 →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

□ **(세정지원) 집중 호우 피해 기업, 수출 중소기업** 등의 **자금 부담**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**세정지원을 적극**적으로 **실시**합니다. 참고 3

○ **집중 호우 피해 기업**과 **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**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없이 **직권으로 납부기한**을 9.2.(월)에서 11.4.(월)로 **2개월 연장**합니다.

○ 그 밖에 사업 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**납부기한 연장**을 **신청***하면 **적극적**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.

*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

참고 1 |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·납부 개요

□ **(신고대상)** 영리내국법인,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,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**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**하는 법인

○ **중소기업**인 내국법인이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**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**50만 원 미만**인 경우 등은 중간예납 신고·납부의무 면제

중간예납 신고·납부의무 면제 대상

-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
-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)
-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
-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,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
-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
-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
-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 제3호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

□ **(중간예납 방식)** ①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**을 기준으로 **납부**하는 방식과 ② **상반기 실적**('24.1.1. ~'24.6.30.)을 **중간결산**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**선택**

중간예납 방식(❶·❷ 중 선택)

❶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: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/2을 납부

$$\text{중간예납세액} = \text{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}\ (\text{공제·감면세액 등 차감}) \times 50\%$$

❷ 가결산 방식 : 상반기('24.1.~'24.6.)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

$$\text{중간예납세액} = \{\text{상반기 과세표준} \times 2\ [\text{각사업연도소득금액(익금}\ominus\text{손금)} - \text{이월결손금} - \text{비과세소득} - \text{소득공제}] \times \text{세율} \times \frac{6}{12}\} - \text{상반기 ·공제·감면세액 ·원천징수세액 ·수시부과세액}$$

□ **(납부)** 중간예납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, 은행 등의 방문없이 **홈택스***를 통해 **신용카드·간편결제** 등으로 **납부** 가능

* 신고 직후 : 팝업창 → '납부하기' 선택

* 일반 경로 : 홈택스 → 납부·고지·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

참고 2	홈택스 미리채움·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

□ 미리채움 서비스

○ **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**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·납부하는 법인은 **분납세액**만 **입력**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「**미리채움 서비스**」를 이용할 수 있음

▌ 신고서 작성 화면(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) ▐

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

'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(자기계산기준)'으로 신고할 경우 파일변환신고 또는 세무서 제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(단위:원)

·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			· 납부세액계산		
101	산출세액	134,260,000	108	중간예납세액 (107×6/직전사업연도월수)	67,130,000
102	공제감면세액		109	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세액공제신청서 작성	
103	가산세액		110	차감중간예납세액(108-109)	67,130,000
104	확정세액(101-102+103)	134,260,000	111	(미납세액,미납일수,세율)	(, , 2.2/10,000
105	수시부과세액			가산세액	
106	원천납부세액		112	납부할세액계(110+111)	67,130,000
107	차감세액(104-105-106)	134,260,000	113	분납세액	33,565,000
			114	납부세액(112-113)	33,565,000

□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

○ 홈택스의 「**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**」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**예상세액**과 **면제*** **여부**를 확인할 수 있음

*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

▌ 신고서 작성 화면(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) ▐

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세부내역

사업연도 월수			12
산출세액	120,927,032	공제감면세액	0
가산세액	0	확정세액	120,927,032
수시부과세액	0	원천납부세액	1,798,720
차감세액	119,128,312	중간예납세액	59,564,156

참고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

□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

○ **(집중 호우 피해 기업)** 행정안전부로부터 **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**

○ **(수출 중소기업) 수출 비중, 매출 감소**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

▌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▐

구 분	선정기준
집중 호우 피해 기업	·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
수출 중소기업	①·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
	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'22년 대비 '23년 매출이 감소할 것 · '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기업 ·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· 한국무역협회 선정 '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'·'수출의탑 수상기업' 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□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

○ **(직권 연장 절차) 일반적**으로는 납세자의 납부기한 **연장 신청**이 **필요**하나, 직권 연장 대상자는 **별도**의 **신청 절차 없이**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

○ **(직권 연장 기간)** 중간예납 신고기한인 **9. 2.(월)까지 신고**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. 2.(월)에서 11. 4.(월)까지 **2개월 직권 연장***

*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(11. 4.)으로 출력

- 아울러, **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**의 납부할 세액이 **1천만 원**을 **초과**하는 경우에는 **분할납부 금액**의 납부기한도 **2개월 직권 연장**

▌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▐

구 분	일반기업	중소기업
분할납부 시기	'24. 10. 2.(수) → **'24. 12. 2.(월)**	'24. 11. 4.(월) → **'25. 1. 6.(월)**

○ **(신청 연장)** 그 밖에 사업 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**홈택스***를 통해 신청하거나, **관할 세무서**에 **우편**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

* 홈택스 경로 : ①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② 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 → ③ 일반신청/결과조회 →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→ ⑤ '납부기한' 선택